

조기졸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학칙 제28조에 의한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한 자가 8개 학기를 이수하기 이전에 졸업함을 의미한다.

제3조 (자격)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자격취소) 학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제6조 (졸업 사정) ① 조기졸업자도 일반 졸업예정자와 같이 사정한다.

② 조기졸업자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한) 편입생 및 위탁생의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3조 적용은 200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8.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2011학년도 제2학년 이상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2013학년도까지 변경 전의 규정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